

II. 입소자관리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정원) 본 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지역신문등에 홍보한다.
4.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제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건축물.가구.기타 조작용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입소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5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6조(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입소/이용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월 이용료) ①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11조(수급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문제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3개월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14조(입소보증금 및 반환금) 계약이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인이 퇴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입소비 잔액 등 반환금을 반환한다.

제15조(채무의 이자 및 이행) 입소인의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여 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년 15% 연체이자를 가산,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고 입소비의 반환금이 부족할 때에는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병 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용료등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7조(비용의 변경방법)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 제18조(비용의 변경절차)** ①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의 변경없이 장기요양급여수가만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② 변경한 계약서의 내용을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을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9조(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도움)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20조(비용부담)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 시설 이용 수가의 20%를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하며, 기타 경감대상자는 12%, 8%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직접 수금하여 기관에 입금한다.

제21조(비급여 항목)

시설은 전조의 장기요양보험 이외에 비용(이하 비급여)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1일 1회의 간식,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식재료 비용 일체.
2.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 일체
3. 개인사정 또는 요구로 인하여 특별실(상급1인실)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4. 기타 개인 희망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비 포함)

제22조(비급여의 경감) 전조의 항목에 관련하여 자원봉사 또는 후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에 게 이를 명시하고 비용을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한다.

제5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23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한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후 보관한다.

제6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2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절차) ① 입소인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 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②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7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용도의 제한) ①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7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노인학대와 관련된 행위로 수급자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③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